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4. 20 선고 2022가단111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4. 20.

주 문

1. C과 피고가 2021. 8. 17. 별지 표시 부동산 지분들에 관하여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표시 제1항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21. 9. 1. 접수 제14695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와 별지 표시 제2항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21. 9. 1. 접수 제14696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사 민규남

별지